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코드번호 | D-03 |
|------|------|

1-1. 연구개발 목적

- O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은 연간 16조원의 국가 R&D에서 발생되는 연구보고서와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권 서비스와 기술 개발 및 관리를 통해서 R&D 성과물에 대한 보안과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과제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764호, 제 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3항, 4항, 6항))
- O 국가 연구보고서 및 산출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때 저작권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불법복제 및 침해예방 방지를 통해 R&D 성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임.
- O 본 연구의 최종 개발 목표는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모델 및 기술 개발임.
- O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모델 개발
- O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보호와 분쟁방지를 위한 R&D 기술 개발
- O 국가 연구보고서 공정한 이용과 R&D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 시스템 구축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O 가. 국가 연구 보고서 및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필요
 -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국가 연구보고서는 실용화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저작권 서비스가 필요하나 연구결과 보고서를 비롯한 중간 연구결과물 유출로 인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 유출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연구보고서 및 산출물은 국가 예산, 공공자금이 지원되어 개발된 기술로서 "공공 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기술지식재산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 이용활성화 시켜야 함.1)
 - 전자정부 3.0에서 제공되는 개방형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 연구보고서의 체계적인 저작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764호, 제 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1항)

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764호, 제 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1항, 4 항

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764호, 제 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항, 14항)